

참고 1

해당분야 인정경력

분야	직급	인원	해당 분야 인정 경력
행정 (감사)	1급	1	· 감사, 기획, 경영, 예산, 법무, 인사, 노무, 총무, 행정, 홍보
행정 (보상)	2급	1	·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 물건조서 작성, 보상액 상정, 보상협의, 보상 민원 처리, 이주대책, 생활대책 관련 업무
	4급을	1	
행정	1급	1	· 감사, 기획, 경영, 예산, 법무, 인사, 노무, 총무, 행정, 홍보, 전산* * 정보화시스템·정보보안 계획수립, 기술개발, 운영, 유지관리
	2급	1	· 감사, 기획, 경영, 예산, 법무, 인사, 노무, 총무, 행정, 홍보
	3급을	3	
	4급을	1	
재무 (재원조달)	2급	1	· 재무, 회계, 세무, 자금, 금융, 예산, 사업개발
	3급을	1	· 투자, 재무, 회계, 세무, 자금, 금융, 예산, 사업개발
	4급을	1	· 재무, 회계, 세무, 자금, 예산, 결산, 출납, 사업개발
재무	4급을	1	· 재무, 회계, 세무, 자금, 결산
재무 (계약)	4급을	1	· 구매, 조달, 계약
전산	4급을	1	· 정보화시스템·정보보안 계획수립, 기술개발, 운영, 유지관리 ☞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 서식 경력증명서의 근무경력이 직급별 지원가능한 경력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

분야	직급	인원	해당 분야 인정 경력
토목 (공항시설 개발)	1급	1	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3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공사종류가 '공항'에 해당하는 경력 2. 직무분야가 '토목'에 해당하는 경력 3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2급	1	
토목 (항만시설 개발)	1급	1	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3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공사종류가 '항만'에 해당하는 경력 2. 직무분야가 '토목'에 해당하는 경력 3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2급	1	
토목	2급	2	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직무분야가 '토목'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3급을	6	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직무분야가 '토목'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4급을	5	

분야	직급	인원	해당 분야 인정 경력
건설안전	2급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직무분야가 '토목'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건축	1급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대한건축사협회」 또는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 증명서상 다음 3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공사종류가 '운수시설'에 해당하는 경력 2. 직무분야가 '건축'에 해당하는 경력 3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2급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대한건축사협회」 또는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 증명서상 다음 3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공사종류가 '운수시설'에 해당하는 경력 2. 직무분야가 '건축'에 해당하는 경력 3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3급을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대한건축사협회」 또는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 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직무분야가 '건축'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4급을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대한건축사협회」 또는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 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1. 직무분야가 '건축'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'기타'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
분야	직급	인원	해당 분야 인정 경력
기계	2급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3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사종류가 <u>'운수시설'</u>에 해당하는 경력 2. 직무분야가 <u>'기계'</u>에 해당하는 경력 3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<u>'기타'</u>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3급을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한국건설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분야가 <u>'기계'</u>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업무가 대분류* 중 <u>'기타'</u>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 * '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' [별표 3] — '3.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' — '가.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'의 대분류
	4급을	1	
전기	2급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한국전기기술인협회」 발행 경력증명서상 다음 2개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분야가 <u>'전기'</u>에 해당하는 경력 2. 담당분야가 <u>'미분류'</u>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
	3급을	1	
	4급을	1	
통신	2급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계획, 설계, 시공, 시험, 검사, 공사감독, 감리, 유지관리, 기술관리, 시공 관리, 연구업무
	3급을	1	